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71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25년 결산 결과 예치금회수 248억원 및 펀드 회수 예상액 70억원 증액

나. (지출) 수입증가에 따른 신규 및 기조성 펀드 출자금 231억원 증액과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87억원 예치금 편성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장·관·항·목	당초(A)	변경(B)	증감액(B-A)	증감률(B/A)
합 계	67,516	99,266	31,750	4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003	77,742	24,739	46.7%
예치금회수	11,453	36,192	24,739	216.0%
기타회계전입금	41,550	41,550	0	-
세외수입	14,513	21,524	7,011	48.3%
기타사업수입	13,000	20,000	7,000	53.8%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	1,500	0	-
기타이자수입	3	1	△2	△76.2%
위탁비반환수입	10	23	13	128.1%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액(B-A)	증감률(B/A)
합 계	67,516	99,266	31,750	47.0%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40,326	63,382	23,056	57.2%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출자금	32,088	55,144	23,056	71.9%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 조성 출자금	6,542	6,542	0	-
서울 벤처펀드 (미래혁신, Vision 2030) 운영	296	296	0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출자금	700	700	0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출자금	700	700	0	-
재무활동	27,180	35,874	8,694	3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25,220	25,220	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420	1,420	0	-
예치금	540	9,234	8,694	1,610.2%
행정운영경비	10	10	0	-
기본경비	10	10	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¹⁾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247억 3,900만원 증가하고, **사업수입**중 미래혁신성장 펀드 회수 예상액이 증가(70억원)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① **예치금**을 86억 9,400만원 증액하고, ②다른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출자금)은 230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1)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재무활동(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당초 지출계획(271억 8,000만원)보다 32.0%, 86억 9,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
- ②다른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도 당초 지출계획(403억 2,600만원)보다 57.2%, 230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부 금액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의 펀드 조성 출자금으로 증액 조정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예치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에 230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출자금**⁴⁾에 지출계획하는 것인 바,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서울 Vision2030 펀드 조성 출자금을 당초 320억 8,800만원에서 551억 4,400만원으로 230억 5,600만원 증액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⁵⁾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난 '25년 8월, '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⁶⁾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동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됨⁷⁾
- 기금운용부서로서는 지난 '19년 4월, 행정안전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어⁸⁾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증액하여 운용하려는 출자금은 별도의 출자 동의안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15년도에 「지방재정법」 중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취지로서 매년 출자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로 통보한 바 있어⁹⁾ 기금운용부서가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해석('19년 4월)과 당초 법 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055, ② 제안(시장) : '25. 8.11, ③ 의결 : '25. 9.12(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3047 ('26. 5.27),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의안 회부”

8)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082 ('19. 4.29), “출연관련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9)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15.10.19)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도부터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¹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출자 동의를 시의회로부터 얻었다하여도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재원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지출계획하려는 미래의 사안까지 약 9개월전 미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만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사 및 의결권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사례일 수 있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인 관련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관련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없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출자금)에 230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은 불가한 사안으로 관련 절차가 이행된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10)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124